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1월 27일,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27)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3. 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보운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진흥 등을 위하여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제7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전완희)

가.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사업 근거 마련(안 제48조제4항제7호 신설)

(1) 개정안 요지

- ‘무장애 관광’을 관광의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문체부장관과 지자체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4항제7호 신설).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생략)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무장애 관광(관광의 물리적</u> <u>·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u> <u>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u> <u>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및</u> <u>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u> <u>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u> <u>에 관한 사업</u>
--------------------	---

(3) 검토사항

- 현행법 제47조의3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고령자’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¹⁾ 또한, 제47조의4에 따르면,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²⁾

1)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024.12.31. 제420회(임시회)제3차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어, 제47조의3에 따른 관광 활동 지원의 대상이 ‘다자녀가구’로 확대되었음(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

2)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관광지의 주차장, 이용·편의시설, 화장실, 보행로 시설 등을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가족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³⁾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보조하는 투어케어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대상 여행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령자와 취약계층인 청소년의 여행 지원 프로그램 등도 추진하고 있음.⁴⁾
- 또한, 2022년부터는 민간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지와 숙박·식음료·쇼핑 등 편의시설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이 제약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도 추진 중임.⁵⁾

○ 그런데, 현행법은 관광활동이나 관광복지 지원 대상을 ‘장애인·고령자’, ‘관광취약계층’ 등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무장애 관광’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열린관광지 조성: '15년부터 '23년까지 132개소 조성, '24년 30개소 조성 중
 4) 투어케어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23년 240명,
 장애인·고령자 대상 여행체험 프로그램: '23년 556명
 고령자의 주도적 여행을 장려하는 ‘꿈꾸는 여행자’ 운영: '23년 720명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관광체험 여행 지원: '23년 6,500명
 5) 2022년 강릉시, 2024년 울산광역시를 선정하여 지원 중임.

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무장애(Barrier-free)’란 1974년 UN이 공표한 개념으로, 특별한 대책 없이도 사용자의 이용에 차별이 없는 생활환경을 의미함.⁶⁾
- 관광 분야에서의 ‘무장애 관광’은 관광의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관광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개념으로는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포용적 관광’(Inclusive Tourism),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 등이 있음.

[무장애 관광 관련 개념]

구 분	개 념
접근 가능한 관광 Accessible Tourism	2006년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 정책의제로 채택된 개념으로, 이동성, 시각, 청각, 인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한 보편적 디자인의 관광상품, 서비스, 관광환경을 제공하여 관광 욕구를 지닌 모든 사람들이 공평성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관광
포용적 관광 Inclusive Tourism	정부의 포용적 성장전략에 대한 관광분야의 논의에 따른 개념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동등한 관광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관광. 즉,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 경제적 취약 계층, 사회적 소수자를 모두 포괄하는 관광
모두를 위한 관광 Tourism for All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물리적 장벽 제거 중심의 개념에서 관광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편적·이념적 개념으로 확장된 것으로, 인종, 경제적·사회적 지위, 장애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는 관광

자료: 한국관광정책(2019, 제75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 현대산업정보연구원(2023. 6), 「광주광역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p.11.

- 따라서,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 등을 위한 관광지 등에서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한정되지 않고, 전 국민이 물리적·사회적·심리적·제도적인 제약 없이 관광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포용적 관광복지의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무장애 관광’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관광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무장애 관광’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무장애’의 개념을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나, 경기도·경상북도 등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무장애’, ‘무장애 관광’ 등을 규정하는 사례가 있음.

[‘무장애’ 개념을 도입한 지자체 조례]

조 례	조 항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무장애 관광</u> ”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u>무장애(Barrier Free) 도시</u> ”란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u>무장애 도시</u> ”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3. “ <u>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u> ”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수정가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3.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동법을 포함하여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에 ‘무장애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에 정의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고, 추진 사업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안 제48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 1. ~ 12. (현행과 같음) <u>13. “무장애 관광”</u> <u>이란 관광활동에</u> <u>어려움이 있는</u> <u>사람들이 물리</u> <u>적·사회적 장벽</u> <u>없이 접근가능한</u> <u>관광을 말한다.</u>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 ----- ----- -----

통령령 또는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 -----.	----- ----- ----- -----.
1. ~ 6. (생략)	1. ~ 4. (현행과 같 음) <u><신설></u> 5.·6. (현행과 같 음)	1. ~ 4. (개정안과 같음) <u>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 한 사업</u> 5.·6. (개정안과 같 음)
<u><신설></u>	<u>7. 무장애 관광(관 광의 물리적·사 회적 장벽을 제거 함으로써 관광활 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 다)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에 관한 사업</u>	<u><삭제></u>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
· 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제48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가능한 관광을 말한다.</u>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생 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신 설></u> 5. · 6. (생 략)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u> 5. · 6. (현행과 같음)